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51200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5. 6. 17.

판결 선고2015.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201,119원 및 위 금원 중 144,031,215원에 대한 2014. 1. 8.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2. 20. 접수 제3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2.

20. 접수 제3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2. 20. 접수 제3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 B, C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과 피고 D, 피고 B과 피고 E, 피고 C과 피고 E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 회사는 2012. 9. 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9. 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및 이사인 피고 C(피고 B과 사실혼관계에 있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신한은행은 2013. 10. 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3. 9. 4.까지가 기한인 신용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8. 신한은행에 144,031,215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추가보증료 245,48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4,924,424원이다.

다. 피고 B, C의 처분행위

- 1) 2013. 2. 20.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형제인 피고 D 명의로 2013. 2.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2013. 2. 20.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형제인 피고 E 명의로 2013. 2.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2013. 2. 20. 피고 C 명의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13. 2.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원고에게 구상금 149,201,119원(= 대위변제금 114,031,215원 + 추가보증료 245,480원 + 법적절차비용 4,924,424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114,031,2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4. 4. 1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 1)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쟁점 1)
- 2) 책임재산 해당 여부(쟁점 2)
- 3)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쟁점 3)

나. 판단

1) 쟁점 1(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한 2013. 9. 5. 사전구상권을,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2014. 1. 8. 사후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의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 8310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의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채무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 9. 5.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다.

2013.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다. 또한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5. 6. 1. 사실조회 결과와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경영자인 피고 B, C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12.경부터 3개월 이상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3. 3. 13. 그 연체정보가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2억 원 외에도 기업은행에 대한 579,997,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고, 2013. 6. 26.에는 위 기업은행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재정악화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2013. 7. 8.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구상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소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사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쟁점 2(책임재산 해당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의 항목 순번에 따라 '제○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한 상속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하여 F, 피고 E로부터 명의만 수탁받았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위 피고들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 C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3(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가) 갑 제5, 8, 9,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2014. 8. 29.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63,784,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448,159,144원이고, 피고 C의 적극재산은 28,716,6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72,747,815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적극 재산	제1토지	4,000,000
제2토지	4,000,000	
김포시 G아파트 516동 18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대금 반환채권	55,784,000	
합계	63,784,000	
소극 재산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44,031,215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4,127,929원	
합계	448,159,144	

〈피고 C〉

적극 재산	제3토지	5,000,000
제4토지	5,000,000	
인천 서구 H 토지	18,716,600	
듀오백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 277주	1,085,840	

적극 재산	제3토지	5,000,000
합계	28,716,600	
소극 재산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44,031,215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9,821,967	
합계	172,747,815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의 각 재산도 피고 B,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9,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재산은 채권인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지 않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1동 301호에는 가액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에 공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
- ② 피고 B의 인천 서구 J아파트 222동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대금 반환채권, 피고 C의 위 아파트 222동 12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경우, 피고 B, C이 잔금 및 인천도시공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인 2012. 12. 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2014. 10. 31. 내지 2015. 1. 15. 해제되었고, 기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중도금대출금 등을 정산한 결과 오히려 피고 B, C이 분양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③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채권은 피고 B, C이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고 C이 무자력 상태인 점으로 보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피고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K 토지에는 가액 223,294,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

⑤ 피고 C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L, M(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배당금 및 경매집행비용 청구채권의 경우 위 강제경매 절차가 집행정지된 채 채무자인 주식회사 디엠에 대한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4회합6)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긍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이 제1토지를 피고 D에게, 제2토지를 피고 E에게, 피고 C이 제3, 4토지를 피고 E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제1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2, 3, 4토지에 관한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김시원

판사장민하

별지